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문

### 대상펀드: 신한공모주&밴드트레이딩30증권자투자신탁 제3호[채권혼합] (舊 신한배당쏄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1. 본 안내문은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관련 가이드'에 근거해 신한자산운용(주)이 운영하고 있는 신한공모주&밴드트레이딩 30 증권자투자신탁 제 3 호 (舊: 신한배당쏄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자에게 발송하는 것입니다.
2. 신한자산운용(주)은 '신한배당쏄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의 설정시점인 2020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관련 가이드'에 따라 당사의 고유자금(당사자금)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당사가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당사의 고유자금(당사자금)을 직접 투자하여 책임투자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설정 이후 6개월되는 시점인 2021년 5월 5일 소규모펀드로 지정되어 집합투자규약 제 43 조에 의거 '신한공모주&밴드트레이딩 30 증권자투자신탁제 3 호[채권혼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 금융위원회의 가이드에 의하면, 자산운용사는 자사의 투자금을 투자한지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회수(환매)할 수 있으나,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3년 의무투자의 예외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었으므로,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18일(자펀드 편입일) 이후 당사의 투자금을 회수(환매)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반드시 회수(환매)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회수(환매)할 수 있음을 미리 고객님의게 알려 드리기 위해 본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는 것입니다.
4. 당사의 투자금을 회수(환매)할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에 회수(환매)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회수(환매)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환매)금액은 투자금의 50%이내로 할 것 입니다.
5. 당사가 당사의 투자금을 회수(환매)하더라도 이는 고객님의 투자금과는 무관하며, 펀드는 정상 운용됩니다.
6.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 (02-767-589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7 일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창 구

